

대법원 2024도12334 정당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A를 정당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,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,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오경미)는,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4도12334 판결)

1. 사안의 개요¹⁾

가. 전제사실

- ▣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당대표 경선방식
 - 국회의원,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우선 압축(당대표 예비경선, 소위 '컷오프') ⇒ 압축된 후보 중에서 전국대의원·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일반당원·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당대표를 최종 선출
 - 경선 결과 반영률은 대의원 투표 45%, 권리당원 투표 40%, 국민 여론조사 10%, 일반당원 여론조사 5%임
- ▣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A를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운동 조직

1) 원심 공동피고인은 상고를 취하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, 상고심에 남아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기재함

- 국회의원들의 회의체인 '국회의원 모임'
 - 원외에서 전·현직 원외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'조직본부'
 - 원내·외를 아우르는 회의체인 '기획회의'
- ▣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모임과 기획회의를 주재함

나. 공소사실의 요지 ⇨ 정당법 위반

▣ 1차 범행

- 2021. 4. 24. ~ 4. 26. 조직회의 구성원인 B, C, D에게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3,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 ⇒ 피고인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A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현금 제공을 권유함
- 2021. 4. 27. B, C, D로부터 현금 3,000만 원을 수령 ⇒ 피고인은 선거인 및 선거운동관계자로서 B, C, D로부터 A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을 수수함

▣ 2차 범행

-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2021. 4. 28. 조직회의 구성원에게 추가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3,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
-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2021. 4. 28. B, C, D로부터 현금 3,000만 원을 수령

다. 적용 법조

[정당법]

제50조(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)

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1.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(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하

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·선거운동관계자·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·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. 다만,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

② 제1항제1호·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2. 소송경과

가. 제1심 ➡ 유죄

■ 징역 2년

나. 원심 ➡ 쌍방 항소기각

■ 정당법 제50조 제2항은 제50조 제1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고, 제50조 제2항의 행위 주체는 반드시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공여자 내지 수수자 이외의 제3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

■ 피고인은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하므로,²⁾ 피고인의 권유행위나 B, C, D의 금품제공이 공동정범 사이의 사전준비라거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

■ 피고인이 B, C, D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0개를 2회에 걸쳐 전달받아 총 6,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

2) ‘제공’은 반드시 금품을 ‘상대방에게 귀속’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지 않고,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(사자; 使者)이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,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‘제공’에 포함된다고 해석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을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수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- ▣ 금품 제공 권유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금품 수령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의 죄수관계
- ▣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 액수에 관한 판단의 당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,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